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11. 30 선고 2022가단160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하

변 론 종 결 2022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2. 11. 30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강릉시 C 임야 1653㎡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07. 7. 1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. 7. 20. 접수 제239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5820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4. 5. 1. 'D은 원고에게 6,6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이에 따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판결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.

그런데 D은 2007. 7. 18. 동생인 피고와 강릉시 C 임야 1653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,600,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. 7. 20.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(민법 제406조 제2항).

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07. 7. 18. 체결되었고,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. 7. 20.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. 7. 19.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택순